**정 관**

2024년 11월 10일 제정

아트블록 주식회사

**정 관**

2024년 11월 10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아트블록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Art-Block Co.,Ltd’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제조업  
1.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1.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1. 도소매업  
1. 기계 및 장비 중개업  
1. 부동산업  
1. 정보통신업  
1.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1.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본 회사의 본점은 {{본점지역}}내 에 둔다. 단,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 각지에 지점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아시아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과 주권**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1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 (종류주식)**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본조에서 정한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이하 본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종류주식의 명칭은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종류주식의 총 발행한도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5분의 4 이내로 한다. 단,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은 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본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은 유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종 종류주식으로 한다. 다만, 종류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의3 (배당우선 종류주식)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주식(이하 본 조에서 ‘배당우선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배당우선 종류주식은 액면금액(또는 1주당 발행가액) 기준으로 연복리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배당우선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우선 종류주식이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도록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④** 배당우선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하도록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⑤**배당우선 종류주식의 경우 의결권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결의로 의결권이 없는 배당우선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이 없는 배당우선 종류주식은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익배당과 관련한 배당우선 종류주식의 효력발생 시기, 미지급 배당금의 처리, 미지급 배당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타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배당재산의 가액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8조의4 (잔여재산분배우선 종류주식)**

1.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주식(이하 ‘잔여재산분배우선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잔여재산분배우선 종류주식은 본 회사가 청산할 때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 최초 발행가액과 최초 발행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금액, 미지급된 배당금 및 상환가액(상환 종류주식의 경우)의 한도까지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는 청구권을 갖는다.
3. 제1호의 우선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보통주식을 소유한 주주보다 청산 등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고, 보통주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율이 위 우선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참가하여 분배를 받을 수 있다
4. 본 회사의 잔여재산은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권, 채권 등으로서, 청산인이 이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현금으로 환가한 후 분배하기로 한다. 이때 잔여재산의 가액은 환가절차를 완료한 날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5.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잔여재산의 가액 결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의5 (상환종류주식)**

1.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 “상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 상환 종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발행가액 ×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 ÷ 365 × 우선배당률]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상환일 이전에 기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3. 상환기간(상환청구기간)은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상환청구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상환청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4.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5.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다음 각목과 같이 정할 수 있다.

1.회사는 상환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상환일정, 상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공고하고, 그 사실을 주주명부에 기재된 그 주식의 주주 및 질권자 등 권리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 다음 각목과 같이 정할 수 있다.

1. 주주는 상환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2. 상환청구 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상환권의 행사방법, 절차, 효력 등 상환권 행사에 필요하거나 관련된 사항으로서 본 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8조의6 (전환종류주식)**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되는 종류주식(이하 “전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전환기간(전환청구기간)은 전환 종류주식 발행일 익일부터 15년 이내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전환기간(전환청구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③ 전환 종류주식에 대한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전환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 또는 우선주식 1주로 한다. 다만, 주식분할 또는 병합 기타 전환 종류주식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 및 주식의 수는 전환하기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 및 주식의 수와 동일하다.

⑤기타 전환청구의 절차, 효력, 전환조건, 전환비율 및 전환가액의 조정, 기타 전환권 행사에 필요하거나 관련된 사항은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 기타 종류주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 및 종류주식 주주와의 계약에 의한다.
2.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신주를 발행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보고 이익배당을 실시한다

**제9조 (주권)** 본 회사 주식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0조 (주식의 발행방법)**

1.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주주 및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2.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정하고, 신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다.
3.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제11조 (주식의 발행과 배정)**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418조 제1항에 따라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본 회사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본 회사는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이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신주를 발행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보고 이익배당을 실시한다.

**제12조 (주권의 명의개서 등)** ① 주식 양도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주주가 증여, 상속, 유증, 강제집행 등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주식을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는 본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본 회사는 주주명부 기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본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경우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하며 제13조부터 제15조, 제17조의 사무를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위임한다.

1.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본 회사의 주식에 질권 등록 또는 신탁재산 표시를 청구하려면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그 등록, 수정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할 때도 같다.

**제14조 (주권의 재발행)** ① 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려면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구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주권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하려면 본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이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수수료)**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 정하는 청구를 하는 자는 본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년 결산기 최종일의 다음날부터 1주일간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② 본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 당시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17조 (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 주식의 신탁회사는 그 성명(상호), 주소 및 연락처,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8조 (주금납입의 지체)** 신주인수인, 발기인 또는 주주는 주금납입을 지체할 경우, 본 회사에게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을 완료할 때까지 납입을 지체한 주금에 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 (주식의 양도)** 주주는 그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제19조의2 (자기주식의 취득 및 제한)**

① 본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상법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본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기에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할 수 없다.

**제19조의3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2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본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본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19조의4 (자기주식의 처분)** 본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 3 장 사 채**

**제20조 (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및 주주 외의 자에게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③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사채모집을 위하여 수탁회사를 선임할 수 있다.

1. 이 정관에서 정한 주권 발행 또는 전자등록, 명의개서, 명의개서대리인,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주주의 성명 및 인감·서명 신고 등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2. 다만 본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 본 조의 이사회 결의사항은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

제20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전환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단, 본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 이사회 결의사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한다)  
②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상법 제513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⑥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사채의 발행일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⑧ 다만 본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로서 본 조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은 경우 본 조의 이사회 결의사항은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

제20조의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단, 본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 이사회 결의사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한다)  
②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상법 제516조의2 제2항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⑦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 발행일부터 그 상환기일까지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⑧ 다만 본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로서 본 조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은 경우 본 조의 이사회 결의사항은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

**제21조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22조 (소집)** ① 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 감사는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 유고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한 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단, 본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유고한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이사들 중에 최연장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⑤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본점소재지에 인접한 지역, 서울특별시 및 각 광역시에서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 (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본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얻어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주주총회 전에 모든 주주의 서면, 전신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로 단축할 수 있으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 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조 (의장)**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22조 제4항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한 이사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시로 정한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25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등)** ① 주주총회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기 위한 발언, 기타 유형력의 행사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 (주주총회 결의 및 의결정족수**) ① 주주총회 결의는 이 정관 및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상법 제368조 제3항)의 주식

2. 감사 선임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그 초과하는 주식(상법 제409조 제2항)

④ 다음 사항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해야 한다.

1. 정관변경

2. 수권자본의 증가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해산, 청산

4. 본 회사의 영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 이상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 이상의 양수

5.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6. 이사, 감사 및 청산인의 해임

7. 자본의 감소(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외한다)

8.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⑤ 주주총회 결의는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주주 전원이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본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제27조 (의결권 등)** ①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 본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③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④ 주주는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표결 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 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⑦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8조 (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점에 보존, 비치한다.

**제 5 장 임 원**

**제29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및 선임)**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 및 비상무이사를 둘 수 있으며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단, 본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이사는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감사 선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1조 (임원의 보선)** 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되었을 때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잔여 임원의 법정원수가 충족되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 선임을 보류하거나 다음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②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취임한 날부터 진행한다.

**제32조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대표이사가 수 명일 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되 이사회 결의로 공동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다.

**제33조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34조 (업무집행)**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이사 또는 감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담한다.

② 대표이사 유고시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이사는 이 정관 제22조 제4항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35조 (이사의 의무와 책임제한)**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임원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과실로 인하여 본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상법 제399조 제1항), 그 책임은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 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한도로 한다. 다만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 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 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 지급규정에 의하되 필요에 따라 매년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 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 및 상여금은,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② 임원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및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다만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퇴직금은 여타 직원 의 경우에 준한다.

제36조의2 (직무발명보상) ① 본 회사의 임직원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즉시 이 사실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본 회사로부터 명시적인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발명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명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항의 경우, 본 회사의 임직원은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본 회사에게 양도하고, 본 회사는 이를 승계한다. 다만 본 회사는 발명진흥법 제15조 1항에 따라 임직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기타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직무발명보상규정에 의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37조 (이사회)** ① 본 회사의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매 4분기 최초의 월요일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안건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하 고,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 이사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1.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사장 또는 회장에 보하고 전무이사, 상무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38조 (이사회내의 위원회)** ① 본 회사는 필요시 이사회내에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 및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제39조 (이사회의 소집)**

1. 본 회사의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1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 (이사회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예산의 책정,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안의 심사, 채택
3. 근로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주요 소송의 제기, 응소, 조정, 화해에 관한 사항
5. 핵심자산의 취득, 매각에 관한 사항
6. 주식의 양도승인(주식양도제한이 존재하는 경우 한정)
7. 대표이사 및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8. 지점, 사무소의 설치 및 폐쇄
9. 주주총회 소집 및 제출안건에 관한 사항
10. 자본증가에 관한 사항
11. 이사의 겸업, 겸직허가
1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13.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4. 상법 제398조의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승인
15. 상법 제397조의2의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에 대한 승인
16. 계약상 이사회의 승인 또는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7. 기타 이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상법, 기타 법률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18.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1조 (이사회 결의)** ① 이사회 결의방법은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상법 제397조의2, 제398조, 제415조의2 제3항의 이사회 승인 또는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해야 한다.

1. 이사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 다.

**제42조 (이사회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이사회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3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영업과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제3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본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4조 (상담역, 고문)**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7 장 계 산**

**제45조 (사업연도)** 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6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의 6주 전에 다음 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4. 영업보고서 및 재산목록

5. 기타 상법 제447조 및 상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서류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의 6주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의 1주 전부터 5년간 본점에 비치해야 하고(지점은 위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의 1주 전부터 3년간 비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해야 한다.

⑤ 본 회사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가 재무제표(상법 제447조 및 상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서류를 의미한다)를 승인할 수 있다.

1.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⑥ 제5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 (이익금의 처분)** 매결산기 총수익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결산기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

2. 별도적립금

3. 주주배당금

4. 후기이월금

5. 임의적립금

**제48조 (이익 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주식,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하며, 매결산기 말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정관 제46조 제5항에 따라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1.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본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보통주식 또는 종류 주식에 배당할 주식을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하거나, 보통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2. 위 3항에 따라 현물 배당을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 구할 수 있는 기간

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⑤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정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48조의2 (중간배당)  
① 본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이하 본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본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단, 당해 결산기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③ 본 회사가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 해당 신주는 직전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한다.  
④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며, 본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이사회 결의사항은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

**제49조 (배당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① 배당금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②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50조 (최초 사업연도)** 본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1조 (내부 규정)**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업무수행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52조 (이사회에 관한 소규모회사 특례)** ① 본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 이사회를 두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 정관 제8조의2, 제11조, 제32조, 제33조의 이사회 결의사항은 주주총회 결의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이 정관 제3조, 제12조 제2항, 제16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37조 제2항, 제44조, 제51조의 이사회 결의사항은 대표이사(대표이사가 없는 경우 사내이사 각자)가 결정하고, 이 정관 제22조 제3항의 이사회는 대표이사(대표이사가 없는 경우 사내이사)로 본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정관 제46조 제1항의 이사회 승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것 외에 이 정관 또는 법령상 이사회 결의사항은 상법 제383조 제4항부터 제6항을 준용한다.

**제53조 (감사에 관한 소규모회사 특례)** ① 본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이 정관 제35조 제2항, 제43조의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② 본 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이 정관 제22조 3항,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이 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2024년 11월 10일일

발기인 대표 대표이사 남동우 (영문:NAM DONGWOO, 국적:미국인, 생년월일:881108-1419217)  
 (개인인감)  
  
서울시 마포대로 78, 11층 1113호